

의안번호	제 285호
의 결 연 월 일	2019년 월 일 (제 376 회)

202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9년 10월 8일

2020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출연계획안

의안 번호	285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9년 10월 8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2020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충청북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

2. 기관별 출연 개요

연번	대상기관	출연목적 및 필요성	출연금액 (단위:천원)	관계법령 (출연근거)
1	(사)충북산학 융합본부	- 과학벨트 청주기능지구 과학사업화 (공동연구) 지원을 통한 지역 R&D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신산업 육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	40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(연구개발사업의 지원) ▶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(운영비 지원)
2	(재)충청북도 지식산업 진흥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4차 산업혁명 대응을 비롯, ICT 산업 육성, 중소 벤처기업 육성 등 재단 설립 고유 기능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운영금 지원 필요 - 도내 벤처·창업기업의 거점인 오창벤처플라자의 시설 개보수로 벤처창업기업의 차질없는 육성을 위해 출연금 지원 필요 	300,000 10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제8조 (운영비 등 지원) ▶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5(촉진지구에 대한 지원)
3	연구개발특구 진흥재단	- '19.6월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에 따른 특구 활성화 위한 '20년 강소특구 육성 사업의 지방비 출연 필요 (국비지원에 대한 매칭 사업비)	250,0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58조의2 (출연 및 보조금) ▶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-47호 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」 별표6(지원협약)

3. 주요내용

① (사)충북산학융합본부 출연금 지원 : 400백만원

- 「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과학벨트 청주기능지구의 공간적 거점인 SB플라자의 조기 안정화를 지원하고 기초과학 연구성과를 활용한 응용·개발 연구 기능강화를 위해 운영비 지원

② (재)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금 지원 : 400백만원

- 「재단법인 충청북도 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비롯, ICT산업 육성과 중소 벤처기업 육성 등 재단 설립 고유기능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해 지식산업진흥원의 운영비 지원(300백만원)
- 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18조의5의 규정에 따라 도내 벤처창업기업의 거점인 오창벤처플라자의 시설 개보수로 벤처창업인프라 확충과 4차산업혁명 플랫폼 기반 강화를 운영비 지원(100백만원)

③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연금 지원 : 250백만원

- 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5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사업비 지원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1 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전략산업과 산업정책팀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김상규	변인순	전수정	3413

기관명	(사)충북산학융합본부								
출자·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 : 노근호 ○ 일반현황 -소재지 :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-41 -규모 : 1국 2실 5팀 -주된사업 : 오송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총괄, 일학습 병행사업 등 								
출자·출연 사업비	○ 출연 예정금액 : 400백만원(도비)								
	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 백만원)								
	구분	사업기간	2019년 예산액	2020년 요구액	재원별				
과학사업화를 통한 기업성장지원	'20.1.~ 12.	400	400	계	국비	도비	시군비	기타	
				400	0	400	0	0	
출자·출연 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의 핵심시설인 청주 SB플라자 운영 안정화와 과학사업화 거점역할 수행으로 연구성과 특화 육성 ○ 사업화(R&BD) 가능한 기업 육성 등 특화 분야에 대한 수준 높은 전문 인력 배양 								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4조 (연구개발사업의 지원) -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, 대학 및 기업 간 공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. 								
지도감독 부서인권 (중 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전액 국비(228억원)로 건립한 청주SB플라자가 조기 안착하여 기초 연구 후속 R&D, 혁신기업 신사업 창출 등 지역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기능을 발휘함으로써 ○ 지역경제 발전과 4%경제 완성 및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기여토록 원 안대로 의결 건의 				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자·출연기관 현황 3.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등 기타자료 4. 관계법령 								

1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청주SB플라자는 기초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이 비즈니스로 이어지도록 하는 과학벨트 청주기능지구의 공간적 거점으로, 국비 228억원을 투입하여 2018. 7월 건축공사가 완료됨
- 특히, 청주SB플라자는 기능지구의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위치하여 운영기관인 충북산학융합본부의 역량과 결합하여 지역 산·학·연이 유기적으로 성과물을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임
- 공동연구 시너지 확산을 위해 소통과 협력, 연구와 창의공간이 융합한 청주SB플라자에 창의적이고 잠재역량을 갖춘 지역 내 젊은 기업이 입주하여 미래 충북을 이끌어갈 과학사업화의 전·후방 효과를 낼 핵심거점으로 운영코자 함
- 도내 기업이 과학벨트 거점지구, 지역혁신기관을 통해 기초연구 성과를 이전 받아 사업화하는 R&BD를 지원하고 기업니즈를 반영한 융합 R&D도 함께 지원하여 지역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

3 출연금 검토

(단위: 백만원)

사 업 명	2018년 결산액	2019 예산액(최종) (C)	2020 예산안			
	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(B-A)	전년대비 증 감 액 (B-C)
과학사업화를 통한 기업성장지원	-	400	400	400	0	0

1-2 출연기관 현황

(사)충북산학융합본부

설립근거	법률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5 ② 산업부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			전화번호 : 043-200-1003			
				홈페이지 : www.osongbaio.or.kr			
주요연혁	'12. 6 : 오송산학융합지구 지정, (사)충북산학융합본부 법인설립 허가 '14.12 : 오송바이오캠퍼스, 기업연구관 준공 '17. 6 : 오송산학융합지구 종료(우수지구) '19. 4 : 충북산학융합본부 제3대원장 선임 (노근호 청주대 산학협력단장)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컨소시엄 참여기관 (도, 청주시, 충북대, 청주대, 도립대)			
인원현황 (‘19.09.25.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		
	22명		21명		1명(원장1 비상근)		
임원 (‘19.09.30 기준)	직책 (직책명)	성명 (익명처리)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	입기 (법령상 정해진 입기 기재)		
	이사장	이○○	충청북도지사		2018.12.07.~2021.12.06.		
	비상임이사	함○○	청주시장		2018.09.28.~2021.09.27.		
	비상임이사	김○○	충북대학교 총장		2018.10.10.~2021.10.09.		
	비상임이사	차○○	청주대학교 총장		2019.07.18.~2021.07.17.		
	비상임이사	공○○	충북도립대학교 총장		2018.01.09.~2021.01.08		
	비상임이사	박○○	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		2018.03.15.~2021.03.14.		
	비상임이사	노○○	(사)충북산학융합본부 원장		2019.04.11.~2021.04.10.		
	비상임이사	윤○○	한국산업단지공단 충청지역본부장		2018.01.09.~2021.01.08		
	비상임이사	안○○	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정책관		2018.01.09.~2021.01.08		
	비상임이사	오○○	대신정기화물자동차(주) 회장		2018.12.07.~2021.12.06.		
	비상임이사	오○○	(주)메타바이오메드 회장		2018.12.07.~2021.12.06.		
	비상임이사	오○○	(주)LG화학 오송공장장		2018.12.07.~2021.12.06.		
	비상임이사	김○○	프레스티지바이오제약(주)		2018.12.07.~2021.12.06.		
	비상임이사	김○○	베스티안재단 이사장		2018.12.07.~2021.12.06.		
비상임이사	윤○○	(주)중현제약 대표이사		2018.12.07.~2021.12.06.			
주요기능	- 오송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총괄 - 기업연구관 운영 및 관리 - 바이오 듀얼공동훈련센터(일학습병행사업)운영 - 청년창업베이스캠프 운영, 바이오페스티벌 개최 - 청주SB플라자 위수탁 운영						
자본금 (단위:백만원)	4,921			출자·출연액 (단위:백만원)	2,135	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백만원)	연도	2017	2018	2019	재무현황 (백만원) '17.12.31기준	자산	5,680
	예산액	5,232	5,272	6,267		부채	760
	지자체 지원액 (출연금)	83 (시)	500 (시)	2,135 (시1,000 도1,135)		자본 (자산-부채)	4,920
경영성과 (단위:백만원) '18.12.31기준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3,280			2,727		553	

1-③ 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청주 SB플라자 과학사업화 지원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전략산업과		출연	400백만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기능지구의 핵심적 과제인 기초과학 연구성과를 활용하기 위한 응용 및 개발 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특화된 분야에서 과학 및 기술 사업화 지원
- ⇒ 기능지구 활성화를 통한 지역 R&D혁신역량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이끌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과학사업화를 통한 기업성장지원사업
- 기간 : 2020. 1. ~ 12.
- 출연액 : 400백만원
- 주요내용 : 과학사업화지원(R&BD), 융합프로젝트 R&D지원, 공동연구실(Collaboration LAB)운영 등

□ 산출기초 ※ 세부사항 별지

- 과학사업화지원(R&BD) : 120백만원
- 융합프로젝트지원(R&D) : 180백만원
- 공동연구실지원 : 28백만원
- 인건비, 운영비, 간접비 : 72백만원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합계	'11년	'12년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
출자	0	-	-	-	-	-	-	-	-	-
출연금	800	-	-	-	-	-	-	-	400	400

□ 기대효과

- 청주SB플라자는 과학사업화를 위한 핵심지구로서 공공기술의 응용 및 개발연구기능이 강화되고, 연구활동 및 사업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
- 성공적인 과학 사업화 가능 기업 육성을 위한 바이오, 신기술사업화 등 특화분야에 대한 수준 높은 전문 인력 배양

□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과학사업화 초기 동력 부재로 기능지구 R&D성과 사업화기업 유치 어려움 발생 및 지역 혁신성장과 미래 신산업 육성기반 상실 우려

별 지

과학사업화를 통한 기업성장지원사업

사업 내용	예산비목		금 액 (단위:천원)	산 출 기 초	비고	
총 계			400,000	(100%)		
출연금 (소계)			400,000	(100%)		
직 접 비	과학사업화 및 기업성장	과학사업화 지원	120,000	· 과제 3건 × 40,000천원 = 120,000천원		
		융합프로젝트 R&D지원	180,000	· 과제 3건 × 60,000천원 = 180,000천원		
	연구환경 조성	공동연구실 지원	28,000	· 공동기자재 5종 × 3,600천원 = 18,000천원 * 호모믹서, 오버헤드스터러, 마이크로 피펫, 전자저울 등 · 연구활동비 10종 × 500천원 = 5,000천원 * 증류수, 메탄올, 실린더, 비커 등 · 기자재 유비보수비 = 5,000천원		
	사업운영비	인건비	18,000	· 3,000천원 × 12개월 × 50% = 18,000천원		
		업무추진비	2,000	· 업무추진비 1식		
		여비	1,000	· 50천원 × 20회 = 1,000천원		
		전문가활용비	10,000	· 전문가 5명 × 500천원 × 4회 = 10,000천원		
		사무관리비	1,000	· 일반수용비(사무용품, 인쇄비 등)=1,000천원		
	간접비			40,000	· 법인 운영 간접비(직접비의 11%)	

가. 과학사업화지원

- (대 상) 공공기술을 이전하여 사업화 가능 기업(3개기업)
- (사 업 비) 120백만원
- (지원규모) 과제당 평균 40백만원 이내(*선정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급예정)
- (추진체계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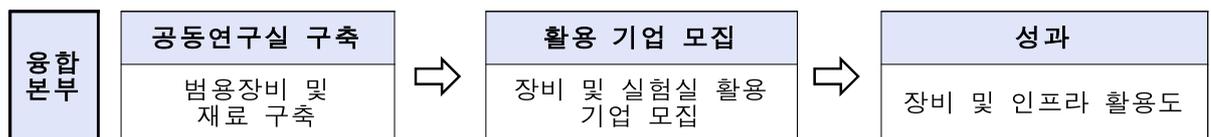
나. 융합프로젝트R&D지원

- (대 상) 공공기술 R&D과제 가능 기업(3개기업)
- (사 업 비) 180백만원
- (지원규모) 과제당 평균 60백만원 이내(*선정평가결과에 따른 차등지급예정)
- (추진체계)



다. 공동연구실(Collaboration LAB) 지원

- (대 상) R&D과제 및 연구 활동이 가능한 기업
- (사 업 비) 28백만원
- (지원범위) 공동연구실 구성 및 연구 활동비(재료비) 지원
- (지원내용) 공동연구실 및 기초재료 제공으로 연구 활동 활성화
- (추진체계)



1-④ 관계법령 발취

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(19-04-30)

제34조(연구개발사업의 지원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구에 있는 연구기관·대학 및 기업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.

㉡ 충청북도 청주사이언스비즈니스플라자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(18-04-06)

제7조(운영비 지원)① 플라자의 운영비는 시설 임대료, 수탁자부담금,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 다만, 도지사는 플라자의 원활한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.

② 운영비의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「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2 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전략산업과 산업정책팀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김상규	변인순	전수정	3413

기관명	(재)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								
출자·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표 : 전원건 ○ 일반현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소재지 :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각리1길 7 -규모 : 2본부 1실 -주된사업 : ICT산업 활성화, 과학기술 진흥, 중소·벤처기업 육성 등 								
출자·출연사업비	○ 출연 예정금액 : 400백만원(도비)								
	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 백만원)								
	구 분	사업기간	2019년 예산액	2020년 요구액	재원별				
				계	국비	도비	시군비	기타	
충청북도지식 산업진흥원 운영지원	'20.1.~ 12.	0	300	300	0	300	0	0	
오창벤처플라자 시설개보수지원	'20.1.~ 12.	0	100	100	0	100	0	0	
출자·출연필요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ICT산업 및 과학 기술 분야 중소·벤처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성장 지원 도모 ○ '03년 12월 준공된 오창벤처플라자 시설내 중회의실 방송시설개선, 이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승강기 교체 등 벤처창업 기업지원 								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(운영비 등 지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. ○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5(촉진지구에 대한 지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·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 								
지도감독부서인견(중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은 비영리 기관으로 현재 자체수입(임대료·간접비) 구조로는 100% 자립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○ 2003년 오창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내 국·도비로 건립(67억원)한 오창벤처플라자 시설 노후화로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에 따라 벤처 집적시설로서의 기능 상실이 우려 ○ 정부 예산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벤처창업생태계 구축 등 고유기능 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기여토록 원안대로 의결 건의 				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자·출연기관 현황 3.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등 기타자료 4. 관계법령 발체 								

2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경영평가 및 외부기관 지적사항

- 해당사항 없음

2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은 지역의 ICT산업육성과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중소·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설립, 운영 중에 있으며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모든 산업의 근간인 SW산업을 육성, 지원하는 전문기관임
- 특히, 최근에는 ICT 및 과학기술 인프라를 활용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인 블록체인, 인공지능, AR·VR, 3D프린팅산업 등을 육성하면서 사업영역 및 기능 확대에 주력하고 있음
- 반면, 비영리기관 특성상 수익사업 확대가 어렵고 현재 수익구조(임대료, 간접비)가 한계에 봉착하여 재정여건이 매우 취약한 상태로,
- 정부 공모사업 중 수익이 없는 사업은 재단운명을 우선 고려하여 응모를 회피하거나 전문가 활용, 컨설팅 등의 부대비용이 수반되는 중장기 공모사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대응에 미흡한 상황임.
- 한편 진흥원이 운영 중인 오창벤처플라자는 스마트IT부품·시스템 관련 기업·기관이 집적되어 있어 충북 혁신성장의 거점이나 시설노후화로 벤처창업시설로서의 기능약화가 우려됨
- 이에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이 정부 예산 확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벤처창업기업의 연구개발 성과확산과 사업화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건의드립니다

3 출연금 검토

(단위: 백만원)

사 업 명	2018년 결산액	2019 예산액(최종) (C)	2020 예산안			
	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(B-A)	전년대비 증 감 액 (B-C)
충청북도지식산업 진흥원 운영지원	-	0	300	300	0	300
오창벤처플라자 시설 개·보수지원	-	-	100	100	0	100

2-2 출연기관 현황

(재)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

설립근거	법률 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 ② 중기부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조례 ①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				전화번호 : 043-210-0800		
					홈페이지 : www.cbkipa.net		
주요연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'03. 7. :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등기 ◦ '04. 1. : 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 통합 ◦ '07.12. : 충북과학기술진흥센터 준공 ◦ '15.11. : ICT디바이스랩운영센터 개소 ◦ '18.10. : 충북블록체인진흥센터 개소 	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충청북도 출연기관		
인원현황 ('18.9.30. 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		
	44명		36명		8명		
임원 ('18.9.30. 기준)	직책 (직책명)	성명 (익명처리)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	임기 (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)		
	이사장	이○○	충청북도 정무부지사		당연직		
	상임이사	전○○	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장		2019.1.5.~2020.1.4.		
	비상임이사	맹○○	충청북도 경제통상국장		당연직		
	비상임이사	이○○	충북대학교 교수		2018.9.25.~2020.9.24.		
	비상임이사	안○○	청주대학교 교수		2018.9.25.~2020.9.24.		
	비상임이사	김○○	충북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		2018.3.29.~2020.3.28.		
	비상임이사	민○○	前.충청북도 행정국장		2019.7.26.~2021.7.25.		
	비상임이사	김○○	충북여성경제인협회 지회장		2019.7.26.~2021.7.25.		
	비상임감사	김○○	충청북도 전략산업과장		당연직		
비상임감사	이○○	공인회계사무소 대표		2018.3.29.~2020.3.28.			
주요기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블록체인·인공지능·ICT융합 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- 지식기반 서비스산업, 미디어 및 문화·관광산업 육성 - 과학기술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R&D거점 구축 - 오창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활성화사업 수행 - 첨단 벤처·중소기업 지원 및 관련 집적시설 관리·운영 						
자본금 (단위: 백만원)	50			출자·출연액 (단위: 백만원)		50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 백만원)	연도	2017	2018	2019	재무현황 (단위: 백만원) '1812.31.기준	자산	13,793
	예산액	11,810	10,859	12,853		부채	1,085
	지자체 지원액 (출연금)	200 (도)	-	-		자본 (자산-부채)	12,708
경영성과 (단위: 백만원) '1812.31.기준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8,236			8,738		△502	

②-③-1 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운영지원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전략산업과		출연	300백만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재정 지원
- 사업총괄 본부장 및 경영지원부서 인력 운영경비, 중대형 공모사업 대응 기획비지원, 지방과학연구단지 부가세 환급금 반납 등 충당
- ⇒ 고유 핵심기능 수행과 사업영역 확대를 통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선도 등 지역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산업 경쟁력 강화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운영 지원
- 기간 : 2020. 1. ~ 12.
- 출연액 : 300백만원
- 주요내용 : 재단운영 및 정부예산확보 활동 지원

□ 산출기초 ※ 세부사항 별지

- 재단 운영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: 100백만원
- 정부 중장기 공모사업 대응 : 100백만원
- 지방과학연구단지 부가세 환급금 반납 : 100백만원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합계	'11년	'12년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
출자	0	-	-	-	-	-	-	-	-	-
출연금	300	-	-	-	-	-	-	-	-	300

□ 기대효과

- 4차 산업혁명 대응을 비롯한 ICT산업 및 중소·벤처기업 육성 등 재단 설립 고유기능의 차질없는 수행
- 정부 공모사업 대응시 수익(인건비·간접비)에 연연하지 않고 지역 산업 활성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사업 응모 가능

□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진흥원의 핵심 기능인 기업지원, 산업 활성화 지원정책 추진 애로, 중장기 정부공모사업 대응 미흡으로 4차 산업혁명 변방 전략 우려

별 지**출연금 산출내역**

□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운영지원 출연금 산출내역

(단위 : 백만원)

단위사업	기 간	소요예산	세부 추진내용
합 계		300	
재단 운영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	'20.1.~'20.12.	1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인건비 및 법정경비(본부장 및 경영부서) · 퇴직연금 추가 적립금(90%→100%) ·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
정부 중장기 공모사업 대응	'20.1.~'20.12.	1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공모사업 대응 기획지원비 (전문가 자문, 컨설팅 등)
지방과학연구단지 부가세 환급금 반납	'20.1.~'20.12.	10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지방과학연구단지 부가세 환급금 반납

2-3-2 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오창벤처플라자 시설 개·보수지원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전략산업과		출연	100백만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입주기업 회의, 세미나를 위한 중회의실 방송시스템 개선(1식)
 - 법적 안전장치설치를 위한 승강기 교체(1대) 및 성능보강(1대)
- ⇒ 기업 R&D 및 사업화, 네트워크 구축 등 인프라 지원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오창벤처플라자 시설 개·보수지원
- 기간 : 2020. 1. ~ 12.
- 출연액 : 100백만원
- 주요내용 : 벤처집적시설 시설 개보수(중회의실 방송시스템 개선 1식, 승강기 교체 1대 및 성능개선 1대)

□ 산출기초 ※ 세부사항 별지

- 중회의실 방송시스템 개선 : 30백만원
- 승강기 교체(1대) 및 성능개선(1대) : 70백만원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합계	'11년	'12년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
출자	0	-	-	-	-	-	-	-	-	-
출연금	100	-	-	-	-	-	-	-	-	100

□ 기대효과

- 오창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및 충북강소연구개발특구 거점공간인 오창벤처플라자의 시설을 개·보수하여 입주기업에 대한 최적의 '원 루프 서비스' 지원
- 특히,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있는 충북지식산업진흥원의 주요 사업과 연계, 산학연 R&D협력 강화를 통한 지역 혁신성장 도모

□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시설 노후화에 따른 충북강소연구개발특구 및 오창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배후 거점공간으로서의 기능상실로 기업 R&D협력 애로 및 4차산업혁명 플랫폼 구축 기반 약화 우려

□ 중회의실 시설 개선

- 사 업 비 : 30,000천원
- 사업기간 : 2020년 3월 ~ 6월
- 사업내용
 - 인테리어(바닥, 벽지 등) : 7,000천원
 - 전기조명 공사 : 3,000천원
 - 방송시스템 교체 : 20,000천원

□ 승강기(엘리베이터) 교체 및 성능개선

- 사 업 비 : 70,000천원
- 사업기간 : 2020년 4월 ~ 7월
- 사업내용
 - 승강기교체 1대(중앙) : 60,000천원
※2003년형 제작 E/V로 성능 개선 불가능
 - 승강기성능개선 1대(동편) : 10,000천원
 - 자동구출 운전장치 설치
 - 승강기 개문출발, 상승과속 방지 장치 설치
 - 기계적/전기적 브레이크 시스템 설치
 - 승강장문 비상가이드 설치

2-4 관계법령 발취

㉠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 (19-08-02)

제8조 (운영비 등 지원) 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한 예산에 관하여 감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. <신설 2011. 8. 12>

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(19-07-09)

제18조의5(촉진지구에 대한 지원)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촉진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「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」 제62조의17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육성관련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때 촉진지구를 지정받은 지방자치단체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3. 29., 2017. 7. 26.>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촉진지구에 설치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·운영자 및 창업보육센터사업자에게 그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④ 촉진지구의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에 대하여는 제22조를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07. 8. 3.]

3 출연 심의요구서

주관부서	전략산업과	소속부서장	팀 장	담당주무관	전화
		김상규	이용일	이재명	3423

기 관 명	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						
출자·출연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 표 : 양성광 ○ 일반현황 - 소 재 지 :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123번길 27-5(도룡동 4-27) - 규 모 : 3실 7본부, 직원수 144명 - 주된사업 : 연구개발특구 육성, 특구 운영 및 인프라 지원 						
출자·출연 사 업 비	○ 출연 예정금액 : 250백만원(도비)						
	○ 예산편성 요구 예정사항 (단위: 백만원)						
	구 분	사업기간	2019년 예산액	2020년 요구액	재원별		
충북청주강소 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	'20.1.~ 12.	0	250	계	국비	도비	시군비
				3,000	2,500	250	250
※ 국비: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직접지원							
출자·출연 필 요 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('19.6월)에 따라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한 육성사업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으로 반드시 지원필요 * 강소특구 지정·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(국비 대비 지방비 20%이상 매칭) ○ 기존 5개 특구에서도 매년 육성사업비를 출연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특구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출연 필요 						
근거법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58조의2(출연 및 보조금) -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 						
지도감독 부서인건 (중 평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('19.6월)에 따라,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으로 특구 활성화를 통해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, ○ 지역경제 발전과 4%경제 및 일등경제 충북 실현에 기여토록 원안대로 의결 건의 						
첨부자료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관리 감독부서 검토결과서 2. 출자·출연기관 현황 3. 출자출연 사업계획서 등 기타자료 4. 관계법령 발체 						

3-① 관리·감독부서 검토결과서

1 출연금 예산요구 부서 검토 의견

- 우리 도는 지역 R&D 강화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충북연구개발특구 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특구 지정을 위해 노력해옴
- 지난 2019년 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지정요청서를 제출하여 6월에 충북을 포함한 6개 강소연구개발특구가 지정됨
-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충북대학교를 중심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 일부를 기술사업화 배후공간으로 총 2.2km²의 면적으로 구성되며, 스마트IT 부품·시스템 분야를 특화 육성할 계획
-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역 주도형으로 새롭게 도입된 소규모 고밀도 R&D특구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강소특구 육성사업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,
-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침에 의한 협약에 의하여 국비지원액 대비 20% 이상의 지방비를 부담하도록 하고 있음
 - *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-47호 「연구개발특구의 지정 등에 관한 세부 고시」 별표6에 의한 협약
- 기존 5개의 연구개발특구(대덕, 광주, 대구, 부산, 전북)의 해당 지자체에서는 특구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매년 출연(30~45억원)해 왔으며,
- 이와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강소특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도비 출연이 반드시 필요하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

2 출연금 검토

(단위: 백만원)

사 업 명	2018년 결산액	2019년 예산액(최종) (C)	2020년 예산안			
			기관 요구액(A)	실과 검토액(B)	증감(B-A)	전년대비 증 감 액 (B-C)
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	-	-	250	250	0	250

※ 전년대비 증가 사유: '20년도 신규계상

3-② 출연기관 현황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
설립근거	법률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②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				전화번호 : 042-865-8800		
					홈페이지 : www.innopolis.or.kr		
주요연혁	◦ '05. 9. : 대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 설립 ◦ '12. 7. : 특구법 개정으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출범(명칭변경) ◦ '18. 2. : 준정부기관 지정			기관형태 (출자, 출연)	정부출연기관 (과학기술정보통신부)		
인원현황 (19.09.02. 현원기준)	계		정규직		비정규직		
	144명		143명		1명		
인원 (18.12.31 기준)	직책 (직책명)	성명 (익명처리)	주요경력 (가장 최근의 1개 경력만 기재)		임기 (법령상 정해진 임기 기재)		
	이사장	양○○	(前)국립중앙과학관장		2018.01.16~2021.01.15		
	비상임이사 (당연직)	이○○	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알자리혁신관		-		
	비상임이사 (당연직)	양○○	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		-		
	비상임이사	권○○	(現)한국기계연구원 대구융합기술 연구센터장		2018.06.18.~2020.06.17		
	비상임이사	원○○	(現)동일대 스마트전력반도체센터 초빙교수		2018.06.18.~2020.06.17		
	비상임이사	홍○○	(現)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성과확산부장		2018.06.18.~2020.06.17		
	비상임이사	신○○	(現)비씨홀딩스 주식회사 자문		2018.12.24.~2020.12.23		
	비상임이사	이○○	(現)원광대 약학대학 교수		2018.12.24.~2020.12.23		
	감사(비상근)	이○○	(現)(사)혁신경제 감사		2018.10.10.~2020.10.09		
주요기능	◦ 연구개발특구육성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(특구법 제46조) - 특구내 연구개발성과 사업화 및 창업의 효율적 지원 - 기술사업화 네트워크 구축 및 상호교류·협력 - 국내·외 투자 유치 및 협력사업 추진 - 특구개발과 관련된 토지, 건물, 시설, 기자재의 취득, 공급 및 임대						
자본금 (단위: 백만원)	41,263			출자·출연액 (단위: 백만원)		101,033(출연)	
최근3년간 예산 현황 (단위: 백만원)	연도	2017	2018	2019	재무현황 (백만원) '18.12.31.기준	자산	66,338
	예산액	209,546	132,828	130,333		부채	15,439
	지자체 지원액 (출연금)	3,550	3,340	4,550		자본 (자산-부채)	50,899
경영성과 (단위: 백만원) '18.12.31.기준	총수익			총비용		당기순이익	
	178,662			178,014		648	

3-③ 출연 사업계획서

사업명	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	구분	출자	-
주관부서	전략산업과		출연	250백만원(도비)

□ 목적 및 필요성

- 공공연구성과의 확산과 기술사업화 촉진을 통해 기술창업 및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강소특구 육성사업 추진 필요
- 4차 산업혁명 시대 지역 혁신 거점으로 강소특구를 육성하여 관련 연구기관 및 기업이 집적된 혁신 클러스터로 조성

□ 출연개요

- 사업명 :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
- 기간 : 2020. 1. ~ 12.
- 출연액 : 250백만원
 - * 총사업비 : 3,000백만원(국비 2,500, 도비 250, 시비 250)
- 주요내용 : R&D 기술사업화 지원, 창업 및 기업성장 지원 등 특구 육성

□ 산출기초

- 강소형 기술 발굴·기획, 강소형 기술이전사업화, 강소형 기업성장 지원 사업 등 추진
 - 300백만원 내외 x 10개 과제 = 3,000백만원
 - ※ 도비 출연금은 지역 특화사업에 활용

【 연도별 출연 내역 】

(단위 : 백만원)

구분	합계	'11년	'12년	'13년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년	'19년
출자	0	-	-	-	-	-	-	-	-	-
출연금	0	-	-	-	-	-	-	-	-	-

□ 기대효과

- 강소특구 육성으로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이 집적된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 R&D 역량강화 및 기업 경쟁력 향상
- R&D-사업화-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

□ 출연 미 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

-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한 동력 부재로 사업 추진의 어려움 발생 및 협약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특구 해지 등 불이익 발생 우려

첨부1

'20년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계획

□ 사업개요

- (목적) 강소특구 기술핵심기관 중심의 공공기술 사업화 전주기* 지원으로 지역 수요 및 이슈 해결 등 지역주도형 자립적 성장기반 마련
 - * 기술발굴·이전(유망산업, 지역현안) → 기술사업화(핵심산업, 전·후방 연계산업)
- (내용) ①강소형 기술 발굴·기획, ②강소형 기술이전 사업화, ③강소형 기업 성장 지원의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
- (규모) 300백만원 내외 x 10개 과제 = 3,000백만원

* 지원규모는 '20년 정부 예산안 기준,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는 국회 예산심의 결과 및 강소특구 시행계획 수립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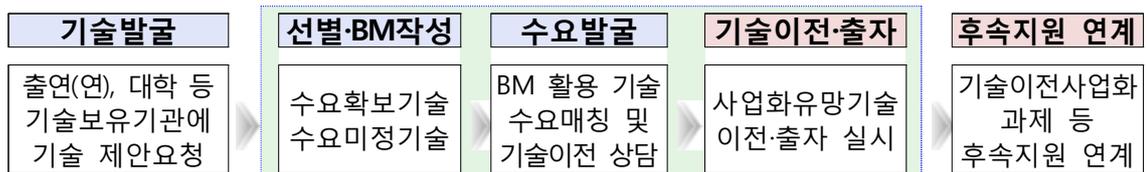
<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프로세스>



□ 사업내용

가. 강소형 기술 발굴·기획

- (사업내용) 강소특구의 기술핵심기관 중심 유망기술 발굴 및 수요기업 매칭을 통해 기술이전 및 연구소기업 설립 촉진
- ① (R&BD연계형 기술찾기) 기술핵심기관-기업 간 기술수요 체계를 구축하고 BM수립 등 기술이전 활동 지원을 통한 사업화 추진



- ② (연구소기업 발굴·기획) 연구소기업 설립 수요 발굴 및 기술매칭, 컨설팅 등을 통해 신규 설립 촉진 (우수 사업화 모델 지역 전파·착근)



- (지원기간/대상) 1년 / 기술핵심기관, 민간 기술거래기관 등

나. 강소형 기술이전사업화

- (사업내용) 강소특구 공공기술(기술핵심기관 보유 기술 등)의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R&BD과제를 지원

구분	기술이전R&BD	연구소기업R&BD
지원대상	공공기술 이전 사업화 추진 기업*	연구소기업 등록 완료(신청) 기업
지원규모	[1단계] 2억 이내 / 1년 [2단계] 3억 이내 / 1년	3억 이내 / 1년
지원기간	최대 2년	최대 2년

* R&BD(Research & Business Development) : 사업화 연계 기술개발

- (지원기간/대상) 2년 / 기술이전·사업화 기업 및 연구소기업

다. 강소형 기업성장지원

- (사업내용) 강소특구 내 기업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 성장, 투자유치(액셀러레이팅 등), 글로벌 진출 등 지원
- (지원기간/대상) 1년 / 창업초기기업, 예비창업자 등

강소특구 지정·육성 협력을 위한 협약서

○ 협 약 명 : 충북강소연구개발특구 지정·육성 협력

○ 협약기간 : 지정 고시일 ~ 지정해제 고시일

○ 협약당사자

(가) 충청북도지사 이 시 중

(나) 청주시장 한 범 덕

(다) 충북대학교 총장 김 수 갑

「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강소특구를 지정하고, 육성·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(가)와 (나)와 (다)는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협약의 목적) 본 협약은 강소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·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, 상호 협력을 활성화하며,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약의 내용) ① 본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는 별첨의 “충북강소특구 지정 요청서”로 한다.

② 제1항의 내용이 「연구개발특구 지정 등에 관한 세부고시」 제11조에 따른 강소특구전문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정될 경우 그에 따른다.

제3조(신의성실) ① (가)와 (나)와 (다)는 충북강소특구의 지정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협약 및 관련 법령(규정)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(가)와 (나)와 (다)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할 경우 협약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참여인력, 현장 확인, 관계서류 열람, 통계자료 조사, 평가 이행 등의 정보 수집·활용을 위한 사항에 동의·협력하여야 한다.



제4조(책임과 역할) ① (가)와 (나)와 (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력하여 이행하여야 한다.

1. 강소특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조직의 설치·운영
2. 공공 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및 창업 지원
3. 혁신생태계 구축 및 강소특구 육성을 위한 재원 분담
 - 가. 연구개발특구육성(R&D) 예산의 국비 총액 대비 지방비 20% 이상
 - 나. 특구 기술금융 조성·운영 동참
 - 다. 연구개발특구육성(비R&D) 예산의 국비 총액 대비 지방비 50% 이상

② (가)와 (나)와 (다)는 강소특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 조례 개정 등을 통한 세제혜택(취득세, 재산세 등 지방세 지원)
2. 강소특구 활성화와 연관되고 시행의 확인 및 검증이 가능한 규제 개선(입지, 토지, 인력, 기술, 실증화, 사업화 등)
3. 산·학·연·관 협력 활동의 활성화 보조
(기술사업화 상담 인력·조직 지원 및 공유 등)
4. 신규 인프라 구축 등의 기반 및 관리 협조
(국·공유 재산 사용·수익·대부·매각, 부지매입비 지원 등)
5. 강소특구의 개발 및 관리 관련 사항
(인·허가 의제처리, 사업시행자 유치 등)
6. 강소특구와 관련된 투자유치 사업

③ (가)와 (나)와 (다)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이나 계획을 자율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.

④ (가)와 (나)와 (다)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“충북강소특구 지정 요청서”의 강소특구 지정계획 및 육성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.

제5조(협약의 변경) (가)와 (나)와 (다)는 협의를 통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 단,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6조(협약의 해약) (가)와 (나)와 (다)는 강소특구의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, 일방이 중대한 협약 위반을 할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 다만, 사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

제7조(권리·의무의 양도금지) (가)와 (나)와 (다)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협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, 위임, 하도급 또는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8조(기타) ① (가)와 (나)와 (다)는 본 협약서에 따라 사업을 기획할 수 있으며, 해당 사업의 내용과 이에 관한 사업비의 지급, 관리 및 사용, 사용실적 보고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.

제9조(해석) ① (가)와 (나)와 (다)는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합의를 통해 결정한다.

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.

③ 본 협약서는 (가)와 (나)와 (다)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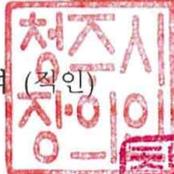
2018년 7월 7일



(가) 충청북도지사 이 시 종 (직인)



(나) 청주시장 한 범 덕 (직인)



(다) 충북대학교 총장 김 수 갑 (직인)



3-④ 관계법령 발취

●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(19-04-01)

제58조의2(출연 및 보조금)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재단의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48조에 따른 진흥재단의 사업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2. 1. 26.]